

◆ 전국도서관대회 제3주제

大學圖書館의 政策 어떻게 할 것인가?

柳濟春*

<崇實大學校 中央圖書館 副館長>

차례

- I. 序 言
- II. 大學圖書館의 現況
- III. 大學圖書館의 三要素
- 1. 藏 書
 - ① 藏書構成
 - ② 圖書館豫算
- 2. 職 員
- 3. 施 設
- IV. 結論에 대신하여

I. 序 言

인류문화의 유산을 간직하고 다듬고 관리하여 미래사회에 방향을 제시하여왔던 과거 도서관들의 역할은 빛나는 업적으로서 칭송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 우리 도서관인들의 자랑이요 지켜나가야 할 긍지이기도 하다.

최고의 대학으로서, 또한 지식의 보고로서의 과거 도서관들은 그 형태와 역할을 달리해 가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급속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되어져 왔다. 특히 디원화와 전문화등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도서관은 그 존재가치와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은 학문연구의 핵심 기구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는다 하겠다.

그러나 현행의 우리 대학도서관의 실상을 살펴보면 해방이후 현재까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경제·사회적 발전상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며 선진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때 그 심각성은 장래 국가발전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하겠다.

한 국가의 발전척도는 주로 그 나라의 고등교육제도의 수준에 달려있으며 고등교육의 수준은 주로 대학의 성과에 달려 있고 대학의 성과는 대학도서관이 훌륭할 때 이루어 질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중심이 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에 관한 발전정책과 학술적 연구는 과거 많은 도서관학자들에 의하여 선행되어져 왔으며, 최근 도서관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발표도 있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학문적 접근보다는 필자 자신이 대학도서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체험으로 느낀 실무적 차원에서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II. 大學圖書館의 現況

대학의 사명은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케 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학을 대학답게 하기 위하여는 훌륭한 교수진과 시설 그리고 연구수행을 위한 지식정보 곧 지적

* 現 崇實大學校 總務處長

자료원(知的資料源)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은 필수적 보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는 그 대학에 도서관의 有無를 논했고, 1970년대에는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대책에 급급하여 장서량과 열람석을 확장하는 양적문제에 치중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몇몇 대학을 필두로 매머드 도서관 건립을 경쟁하듯이 다투어 건립하였지만 도서관기능을 전제로한 효율적인 조직과 유능한 사서의 확보 그리고 부족한 없는 장서의 확대·건물과 시설의 확충 및 기술 업무의 개발과 개선등 내적인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학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는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성에 입각한 내용이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들을 살펴보면 주로 「대학설치기준령」「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다. 이중 도서관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세로이 제정된 법령이지만 대학도서관에 관련한 부분은 내용상 대등소이하거나 별도의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구법령인 도서관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다. 도서관의 3대요소라 할 수 있는 시설·자료·직원등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제 규정도 상당히 모호하거나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선에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이 1991년에 도서관진흥법으로 세로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시행 주무관서가 문교부로부터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기존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다면 세로이 제정될 법령에 대하여는 대학도서관 관련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법령에 규정된 내용들이 강력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대

학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이 충실히 갖추어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대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기구 구성을 살펴보면 도서관은 대학에 딸린 부속기관중의 하나로서, 소위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라는 문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정도가 도서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학내의 각종계획과 정책사업중 도서관 부문은 우선순위에서 늘 뒤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실무자로서 좌절감을 맞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런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 즉 우리 자신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법적, 제도적 장치나 대학당국의 태도가 발전적이고 공정적으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철저한 직업의식과 자기혁신을 통한 지속적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전문적 사서로서 손색이 없도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대학도서관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개선되어져야 할 여러문제들이 남아 있으므로 이들을 도서관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I. 大學圖書館의 三要素

I. 藏書와 豫算

① 藏書構成

도서관진흥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도서관자료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

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도서관에서 자료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도서와 정기간행물이라 할 수 있다.

도서와 정기간행물에 대한 양적규모는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3항과 4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장서수와 정기간행물의 종수가 적정한 수준의 기준인지, 혹은 대학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의 학생정원 산출에 있어서도 야간학생수가 전체학생의 1/2에 미치지 못하면 정원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서 야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는 기준량 자체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전일제 수업과 야간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등 주간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런 불합리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규모도 학부학생들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서기준을 두어야 한다. 최근 대학원중심교육의 정책확산으로 대학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각종의 특수대학원의 신·증설의 경우에 비추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305개의 대학도서관이 있으며 소장도서는 모두 27,468,776권으로 학생 1인당 도서수는 18.43권에 불과하다.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21.49권에 그치고 말아 대학설치 기준령 제12조에 규정된 30권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법령이 아무리 훌륭하게 제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규정되며 시행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확보되어 지도록하는 강력한 시행조치가 병행되어 쳐야 한다.

1989년 Harvard대학의 장서규모가 우리나라 전사립대학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1985년 일본 국립대학 학생 1인당 도서수가 133.8권 연간증가량 4.9권, 미국의 50개 국립종합대학의 학생 1인당 도서수 163.8권 연간증가량 5권등 선진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실정으

로, 향후 정보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강력한 발전계획이 하루속히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교양잡지나 종합지등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학과의 특성이나 규모, 석·박사과정의 존재유무, 교수의 수등을 고려한 산출근거가 아닌 단순히 학과별 종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자연계 학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종수를 늘려 놓았으나 이 또한 산출근거가 모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권위있는 학술잡지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곧 대학의 기능인 연구수행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관건이며, 훌륭한 도서관으로서의 필수조건이므로 분야별 학술잡지의 확보기준도 상향조정되어야 하겠지만 계열별 특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대학원 과정의 설치 유무와 교수의 수 그리고 학생수와 연계하여 산출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서의 수는 학과당 500권 이상과 학생정원 80명 초과시 초과하는 1인마다 5권씩을 더하며, 학술잡지도 학과당 2종이상 비치도록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305개 중에서 전문대학도서관수가 113개(37%)를 차지하는등 최근들어 사회적 요구가 늘어 나면서 전문대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로 보아 전문대학도서관의 장서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도서관 장서량의 평균은 18,735권으로 20,000권에도 미치지 못하며 학생 1인당 도서수도 6.54권에 불과하며 장서수가 5,000~6,000권 수준에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기준 자체가 매우 낮게 규정되었으며 연간 도서증가량에 관한 규정도 없는등 법령 자체의 문제로부터 연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圖書館豫算

대학운영에 있어서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학 총예산액중 많은 부분을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현재 대학도서관의 실상이 대단히 미흡한 형편이므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학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관련한 법령중에서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나 「권장사항」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필요에 따라 하달되곤 하였다. 즉 1981년 문교부로부터, 「대학도서관운영 개선방안」에 대학 경상비의 3% 이상을 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1987년 「사학기 관재정운영지침」에 학생 1인당 20,000원 이상의 자료구입비를 계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1990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527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1987년의 「사학기 관재정운영지침」에 나타난 20,000원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경상비의 3% 이상을 배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무시되어 버렸다. 즉, 가급적 예산이 적게 들고 시행가능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행해 진다고 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20,000원이란 것도 필자가 재직중인 숭실대학교가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회장교로 있었던 지난 1983년 문교부에 요청하여 책택된 것으로 그간의 물가상승률등에 따른 가격인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수년간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외국도서나 학술잡지(특히 국외잡지) 등을 제외하고 국내도서만 구입한다 하여도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한 권당 4,000~5,000원하는 시집 혹은 소설등 문학류의 도서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액수에 불과하다. 하물며 권당 가격이 수만원에서 십여만원을 상회하는 외국도서나 분야별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각종 사전류·편람·년감·법전·색인) 등을 고루 갖추어 장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규모는 학생 정원 1인당 3권이상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1항 3호의 규정을 실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1990년도 사립대학의 경우 평균 잡지구독에 드는 비용이 전체 도서비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연간증가량을 규정하는 학생 1인당 구입도서수를 산정할 때의 학생 정원은 주·야간을 구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학부 과정과 대학원과정을 구분하여 별도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연구수행에 훨씬 더 많은 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석·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는 도서와 학술잡지외에도 지도·사진·음반·테이프등의 시청자자료와 마이크로 펠럼·CD-ROM 및 각종 전산화된 자료등 여러 장비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고집적의 새로운 자료의 등장으로 단순히 도서만을 근거로한 자료구입비의 산정방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수 × 0권 × 0원 식의 계산이 아닌 대학경상비의 일정비율을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책정하여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저수준을 너무 낮게 책정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 즉 모든 대학도서관이 최저수준에 머물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아닌 분명한 시행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의 재정형편이 대학도서관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2. 職 員

도서관의 좋고 나쁨을 평할때 도서관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직원과 장서와 시설을 들 수 있는데 그 평가비중은 직원이 70%, 장서가 25%, 시설이 5%이어야 한다고 미국의 도서관학자인 Heat씨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정은 어떠한가? Heat씨의 주장을 거꾸로 바꾼상태가 현재의 대학도서관 모습이 아닌가 한다.

최근 각대학들의 도서관 신·증축등으로 인한 외적규모의 확대를 자랑하고 법적인 기준량을 이미 확

보한 것을 이유로 자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악한 시설과 미흡한 장서규모를 최대한 활용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서직원의 규모를 극복하여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던 현장의 선배사서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대학도서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이제라도 대학도서관의 내실을 기하고 질적봉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더욱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991년 4월 8일 제정된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는 대학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과거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의 「당해 대학의 학생수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라는 규정을 다른 대통령령에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보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사서직원이라 함은 정사서와 준사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더욱기 일반행정직 직원의 배치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는등 도서관의 직원배치 기준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다른 대통령령」에서는 반드시 언급되어 지기를 바라며 또한 연간도서증가량에 따른 사서직원의 연차적 증원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근거로 하여 볼때도 기준미달의 대학도서관이 다소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이역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예산의 규모가 적절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되었거나 교환·기증등으로 미정리된 도서가 서고에 쌓여 있는 수량이 도서관 정리담당직원들이 거의 1년간 해야 할 업무량에 달하는등 사서직원의 규모가 매우 미흡한 대학도서관도 있다고 한다. 이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이고 귀중한 정보자료의 사장이며 유능하고 의욕있는 사서직원으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켜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며

양질의 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구입과 수증·교환등의 수서업무와 분류·편목등의 정리업무 그리고 참고·서지업무 및 열람·대출업무등으로 업무량도 많을 뿐더러 교수와 학생등 이용자에 대한 봉사업무도 더욱 다양화되고 각분야별로 보다 높은 전문적 지식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같은 높은 수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각급 전문직사서(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와 일반 행정직 직원의 규모가 모자람없이 또한 일방으로 치우침없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 사립대학의 전문직사서 1인당 봉사 대상자 수는 778명으로(정·준사서포함) 미국·일본등의 전문사서의 그것과 비교할때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치우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수준높은 전문직 사서의 확보란 어려운 일이다. 더욱기 대학원 출신의 주제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지지만 이들을 전문직으로 대우하여 받아들일 만한 직제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즉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정관(준칙)에서 도서관장(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정하고, 사서직원은 기술직계로 편성하여 4급(사서참사)까지로 한정하여 일반직의 2급(참여)까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여 있다.

최근 몇몇 사립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사서직원의 부관장제나 사서장제를 택하여 시행중이며 이의 확산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규정도 개선하는등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사서의 자격등급도 정·준사서에서 1급정사서와 2급정사서 그리고 준사서로 자격의 요건도 세분화되고 더욱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1급정사서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전문직 사서로서의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는등 제도적인 장치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문직 관장제의 길을 열던가 아니면 부관장제의 명확한 규정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정사서들의 대부분이 2급정사서에

해당되므로 결국 사서의 자격이 하향조정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사서들은 도서관이라는 제한된 곳에서만 장기간 근무하게 되므로 한정된 직책 및 직급에 묶여 인사적체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타 부서의 일반직원과는 별도의 직제와 직책을 모색하여 전문직에 걸맞는 대우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수 있고 대학도서관의 정보봉사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능한 사서의 확보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사서직원의 업무속성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서직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연수회와 세미나등의 참석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 사서직원에 대한 재교육의 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서관진흥법 제20조(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1항에서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서직원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사서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등 겨우 명목만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전국에 있는 공·사립 그리고 관종의 구별없이 모든 사서직원을 상대로 하는 각종의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실공히 국가의 재교육기관으로서 순색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조직이 과거의 자료지향적 관리형태에서 이용자지향적 관리형태로 변화되어 사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특히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이용자의 정보요구의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많은 경험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서직원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3. 施 設

대학도서관의 시설에 관한 규정은 현재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것만 남아 있고, 도서관진흥법 시행

령에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것을 전제로 구 도서관법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될 법령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건물은 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장서 공간과 학생과 교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열람 공간 그리고 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공간과 기타 부대시설등으로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각종 시설은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건물의 배치, 조명, 습도와 온도조절등의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다.

학습과 연구를 위한 열람공간은 대학도서관의 가장 많은 이용빈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설의 하나로서 장시간 머물면서도 면학분위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여유있는 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열람석의 규모에 대한 규정을 보면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1항 2호에서 「총학생정원의 2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총학생정원이라 함도 자료기준의 근거로서의 총학생정원과 같은 의미로 야간학생수를 제외한 것으로 「전체학생수의 20%」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사립대학의 경우 17.5%의 확보율을 보였고, 국공립대학은 20.5%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최근의 계속되는 대학도서관의 신·증축에 힘입어 열람석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리라고 기대되나 현실적으로 대학내의 학습공간이 절대부족한 우리 대학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의 상향조정과 더불어 폐적한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람석당 면적의 기준도 여유있게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을 위한 대학원열람실의 설치근거도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참고 열람실과 정기간행물실의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열람석을 갖추도록하는 설치규정이 제시되어야 하는등 열람공간에 관한 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비·개선되어야 한다.

그밖에 도서관 자료를 소장하기 위한 장서공간과 수서·정리·열람봉사등의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공간 그리고 시청각자료실과 세미나실 및 타자실·복사실·휴게실등의 시설등은 장서량과 도서관직원규모 그리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인 공간배치가 요망되는 사항이며 특히 해마다 수와 양을 더해가는 도서관 자료의 소장을 위하여 장서공간의 여유있는 확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전체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IV. 結論에 대신하여

대학도서관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먼저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하며 그것은 곧 관계 법령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설치 및 규모와 시설 그리고 사서직원등의 인적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관계 법령 즉 도서관진흥법 및 동 시행령·대학설치 기준령·학교법인 정관(준칙)과 기타 법령의 관련조항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에 입각하여 정비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령들이 아무리 잘 짜여

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결여되었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법령이 되고 말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학교육의 특성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으나 질적수준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위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수·학생등의 이용자로 하여금 연구와 학습에 최대한으로 활용토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재차 강조하여 둔다.

끝으로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의 부실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우려를 갖게 되는 시점에서 대학도서관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도 1990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도서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이 시행되었다. 이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로 여겨지며 그 규모와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계속 유지하여 대학교육의 선진화와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알 림

동의대학교중앙도서관은 198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과 협조하여 KORMARC에 의한 도서관 전산화를 시작하여 지금은 수서업무, 목록업무, 대출업무, 검색업무등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의 각급 도서관은 전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서관마다 별도로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전산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도서관들이 좀더 경제적으로 빠르게 전산화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 결과 저희 도서관의 프로그램중 일부인 목록업무를 PC에 옮겨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문대학에 약 1년 동안 사용해 본 결과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PC에 계속 개발하여, 국내 도서관중 전산화를 하려고 하지만 프로그램개발 능력이 없는 도서관에 한국도서관협회의 주관하에 무료로 보급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계신 도서관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동의대학교중앙도서관 / (051) 804-1500/최창호
• 한국도서관협회 편집실 / 535-4868 · 5616